

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규정

제정 : 2018. 02. 09.

담당 : 기획실(950-5424)

----- 목 차 -----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계획의 수립)	제4조(운영)
제5조(평가)	제6조(대학발전위원회)	제7조(자문위원회)	제8조(기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성서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건학이념과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하여 수립, 운영하는 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발전계획'이라 함은 특성화 계획을 포함하여 건학 이념을 실현하고 대학의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비전, 목표, 추진 전략, 추진 체계, 세부 실행 계획, 예산 등을 말한다.

제2장 운영

제3조(계획의 수립) ① 대학 발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대학 외부 환경 분석
2. 대학 내부 여건 분석
3. 대내·외 의견 수렴
4. 대학 발전 및 특성화 전략 수립
5. 연간 사업 계획 수립
6. 실행 계획 선정

③ 대학 발전계획의 입안은 기획실에서 하며 대학발전위원회와 교무위원회의 및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4조(운영) ① 총장은 대학 발전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② 각 학과는 대학 발전계획에 따라 자체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제5조(평가) ① 대학 발전계획 운영은 자체평가규정에 따라 자체평가기획위원회에서 매년 평가한다.

② 대학 발전계획 운영의 평가 결과는 차기 대학 발전계획 수립시 환류하여 반영한다.

제6조(대학발전위원회)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발전위원회에서 심의하며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따로 총장이 정한다.

제7조(자문위원회) ①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하여 자문받기 위하여 내·외부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외부 자문위원회 위원은 교계, 정계, 관계, 재계, 교육계, 지역사회 인사 및 학부모 등에서 위촉하여 구성하며, 분야별로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대학 제 규정 및 각종 지침을 준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02월 09일부터 시행한다.